

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	2018년도 제3차 회의록
일 시	2018. 02. 09(금) 16:00 ~ 17:00
참석의원	정광희 의원, 김진경 의원, 김재환 의원, 임지영 의원, 박재범 의원, 오일숙 의원, 최근영 의원, 김준혁 의원
불참의원	황태선 의원, 장용석 의원, 배진건 의원
간 사	강창호 기획실장, 경희수 기획실 주임
<p>I. 안 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교육기본시설(LA기숙사) 확보 계획 자문 ○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○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<p>II. 회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광희 의장(이하 의장)이 의원정수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○ 의장이 해외교육기본시설(LA기숙사) 확보 계획,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,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(이하 기획실장)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 ○ 기획실장이 배포된 유인물을 토대로 해외교육기본시설(LA기숙사) 확보 계획,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,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안건을 자세하게 설명함 ○ 해외교육기본시설(LA기숙사) 확보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실장이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미국에 병원을 운영하는 대학, 미국에 캠퍼스 또는 교육기본시설을 유치한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해외교육기본시설(LA기숙사)을 확보하고자 함을 설명함 - 의장이 대학의 해외교육기본시설 확보를 통한 대학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며, 확보 이후에는 우리 대학 입학생 중 희망자 전원에게 미국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현지생활을 체험토록 하고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을 부연 설명함 - 김준혁 의원이 구체적으로 시설규모 및 연간 수용계획 인원과 소요 예산액, 그리고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질의함 - 기획실장이 시설규모는 부지 364평, 건물 284평의 2층 건물 2개동이며, 동시에 총 48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연간 254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- 경희수 간사가 소요 예산액은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약 64 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, 예산은 2017회계연도 경상비전입금 중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한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- 임지영 의원, 김진경 의원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의전원, 간호대, 약학대 학생들에게 LA병원에서의 실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함 	

- 의장이 의전원, 간호대, 약학대 학생뿐만 아니라 건강과학대학, 경영학과 졸업생 등에게도 LA차병원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

○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

- 기획실장이 2017년 4월 1일에 공포한 학과명칭(보건복지행정학과, 데이터경영학과, 미술치료·상담심리학과)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표준분류 조사결과 통계조사 실시 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칙 개정을 하게 됨을 설명함
- 김재환 의원이 어떤 오해의 소지인지 질의함
- 최근영 의원이 2017학년도에 졸업하는 학생이 변경된 학과명을 사용하여 졸업하게 될 경우 통계조사 실시 전의 학과명과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학생들의 학위명 부여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포일을 개정한 날이 아닌 2018년 2월 1일자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함
- 김준혁 의원이 2018년 2월 1일자 이전의 재적 중인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
- 김진경 의원이 2018년 2월 1일자 이전에 재적 중인 보건복지정보학과, 융합경영학과, 미술치료학과의 학생들은 2월 1일 이후에 변경된 학과 명칭으로 소속을 변경됨을 설명함

○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

- 기획실장이 의학전문대학원의 유연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입학일 및 개강일을 변경하고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을 심의하게 됨을 설명하고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음

현 행	개 정 (안)
제4조 (입학시기) 의전원의 입학일은 3월 1일부터 30일 <u>이내로</u> 한다. <개정 2015.3.1.>	제4조 (입학일) -----입학일은 3월 1일부터 30일 <u>전후로</u> 한다. <개정 2015.3.1., 2018.3.1.>
제20조 (학년, 학기) ③ 각 학년의 개강일은 3월 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<u>임상실습 과정의 개강일은 6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u> <개정 2016.12.1.>	제20조 (학년, 학기) ③ ----- -----,<삭제> -----. <개정 2016.12.1., 2018.3.1.>
부 칙 1. ~ 10. (생략) <신설>	부 칙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이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이에 참석한 모든 의원이 동의하고 본안을 항목별로 논의한 바, “모든 항목이 적정하게 자문·심의되었다”고 의견을 표하고,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다.
-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

III. 폐회선언

-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

	의 원	서명	의 원	서명
화 인	정광희	정광희	김재환	김재환
	김진경	김진경	황태선	
	임지영	임지영	박재범	박재범
	오일숙	오일숙	최근영	최근영
	김준혁	김준혁	배진건	
	장용석			